미래를 준비하는,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

제151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▢ **일시·장소:** ’26. 7. 15.(수) 14:00 ~ 16:0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▢ **참 석 자**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

○ 해 양 경 찰 청 : 기획조정관, 안건 소관 국·과장, 기획재정담당관 등 9명

▢ **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3건(원안의결1, 수정의결 2), 보고 2건**

【심의·의결 3건】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심의 결과	부서
1	부령·훈령·고시	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 관련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	• 「지방자치법」 개정*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**(7.1.시행)에 따라 우리청 소관 **법령(5개) 및 행정규칙(6개) 일괄개정** * 기존 특별시장·광역시장 → 개정 특별시장·**통합특별시장(신설)**·광역시장 ** 기존 전라남도·광주광역시 →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	원안 의결	혁신 행정 법무
2	예규	「해양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」 제정안	• **국내·외 위탁 교육훈련**의 **체계적 운영**을 위한 표준화된 **제도적 기반 및 실효성 높은 교육훈련 체계 마련** △ 위탁 운영계획 정의 및 적용범위 △ 해양경찰 계약학과 개설 △ 연간 교육훈련계획 반영 의무화 △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등 수정사항 위탁 교육훈련 실무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등 (총경·4급 이하 → 경정·5급 이하)	수정 의결	교육 훈련
3	훈령	「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관리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**관리체계(부서) 재정립**(관리부서→총괄부서, 관리부서) • 주·부 조정자 외 **예비요원(2명) 지정** 곤란한 경우 **예외 조항 신설** • 실제 임무수행 시 **월간 교육훈련 대체조항 신설** • **항공촬영지침 개정**(허가→승인) 사항 **반영** 수정사항 약칭 사용 변경(운용자 등 → 운용자) 및 국방부 항공촬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(촬영허가권자 → 촬영승인권자) 등	수정 의결	해양 영역 인식

【보고 2건】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**2/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**	위원회
2	**해양경찰청 성과관리 현황**	혁신 행정

첨부1 **수정의결 사항**

▢ 「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」 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7조(해양경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 ② 해양경찰 계약학과는 대학 등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. **다만, 지나친 비용**이 드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.	**제7조(해양경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)** ① (생 략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 **다만,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소 등 지나치게 많은 비용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6조(위탁 교육훈련 결과 평가) ① (생략)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위탁 교육훈련 운영 결과를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**교육훈련담당관에** 통보해야 한다. ③ (생 략)	**제16조(위탁 교육훈련 결과 평가)** ① (생략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교육훈련담당관에게** ----------. ③ (생 략)
제17조(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) 시행자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와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정책자료로 **적극**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	**제17조(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)**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적극** ---------- ----.
제18조(복무 의무) ①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(위탁 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**객관적으로** 인정되는 직무 분야로 한다. (이하 생략)	**제18조(복무 의무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객관적으로** ----------. (이하 생략)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21조(복귀명령)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**준수하지 않은** 경우 3. ~ 4. (생 략) ②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상자에게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명해야 한다. 이 경우 대상자에게 **복귀 명령서**를 문서로 송부해야 한다. ③ (생 략)	**제21조(복귀명령)**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---------- -- **위반한** --- 3. ~ 4. (생 략) ② ---------- **교육훈련 중단 및 복귀 명령서** ----------. ③ (생 략)
수정사유 표현 등 자구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8조(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생 략) ④ **총경·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을 해양경찰청의 국·관의 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경·4급(과장급)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며,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.**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.	**제8조(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~ ③ (생 략) ④ **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의 국·관의 장, 위원은 총경·4급(과장급)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고, 위원의 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며,** ----------.**
수정사유 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을 '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'으로 하향 조정하고, 기타 행정규칙 조문[1]을 참고 명확하게 수정하고, '경미하다'는 표현 삭제	

1) **(해경청훈령)「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」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** 해양경찰청(이하 "본청"이라 한다)과 그 소속기관의 **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및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**(이하 "소속공무원등" 이라 한다)의.... (이하 생략)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8조(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생 략)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전년도 위탁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**2.** 위탁 교육훈련 분야와 과제 선정, 활용·관리 및 제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**3.** 해양경찰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, 계약 해지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**4.** 위탁 교육훈련 과제의 예비 선정에 관한 사항 **5.** 그 밖에 위탁 교육훈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	**제8조(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~ ④ (생 략)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전년도 위탁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2. **위탁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한에 관한 사항** **3.** 위탁 교육훈련 분야와 과제 선정, 활용·관리 및 제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**4.** 해양경찰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, 계약 해지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**5.** 위탁 교육훈련 과제의 예비 선정에 관한 사항 **6.** 그 밖에 위탁 교육훈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수정사유 심의 대상 추가(위탁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제한에 관한 사항)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8조(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생 략)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의(開議)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**제8조(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~ ⑥ (생 략) ⑦ **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.
수정사유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에 실무위원회 추가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23조(일시 귀국) ① ~ ③ (생 략) ④ **대상자가 승인 없이 교육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만큼의** 체재비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며,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다음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. ⑤ (생 략) ⑥ 국내 체류 기간이 승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**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며, 국내 체류 기간이 승인 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다음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**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 위기로 인한 때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.	**제23조(일시 귀국)** ① ~ ③ (생 략) ④ **대상자가 승인 없이 위탁 교육훈련 도중에 일시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만큼의** ---------- ⑤ (생 략) ⑥ ---------- **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,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.** ----------
제26조(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) ①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대상자가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**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(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. (이하 생략)	**제26조(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** ---------- (이하 생략)
수정사유 표현 등 자구 수정	

▢ 「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5조(운용자등의 지정과 임무 등)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해 **통제관, 조종자 및 부조종자(이하 "운용자등"이라 한다)**를 지정해야 한다.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**운용자등으로** 지정해야 한다.	**제5조(운용자의 지정과 임무 등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- **조종자 및 부조종자(이하 "운용자"라 한다)와 통제관을**----------. ② ---------- ---------- **운용자로** ----------.
제7조(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예비요원 및 **운용자등**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 유지, 비행기술 향상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② (생 략)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예비요원 및 **운용자등**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	**제7조(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---------- **운용자**---------- ----------. ② (생 략) ③ ---------- **운용자**---------- ---------.
제11조(운용 범위) 운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. 1. ~ 5. (생 략)	**제11조(운용 범위) 운용자는** ---------- ----------. 1. ~ 5. (생 략)
제33조(운용자등 면책) ① **운용자등은**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·망실이 발생한 경우 「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손·망실 시 행동요령」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.	**제33조(운용자 면책)** ① **운용자는** ---------- ----------.
[별지 제1호서식]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<table><tr><th rowspan="2">운용자</th><th colspan="2">통제관</th><th colspan="2">조종자</th><th colspan="2">부조종자</th></tr><tr><th>계급</th><th>성명</th><th>계급</th><th>성명</th><th>계급</th><th>성명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**[별지 제1호서식]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** <table><tr><th rowspan="2">통제관 및 운용자</th><th colspan="2">통제관</th><th colspan="2">조종자</th><th colspan="2">부조종자</th></tr><tr><th>계급</th><th>성명</th><th>계급</th><th>성명</th><th>계급</th><th>성명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

<table>
<tr><th>상 정 안</th><th>수 정 의 결</th></tr>
<tr><td>[별지 제7호서식] 무인비행장치(사고·고장·파손·분실) 발생 보고서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운용자 등</td><td colspan="2">통제관</td><td colspan="2">조종자</td><td colspan="2">부조종자</td></tr>
<tr><td>계급</td><td>성명</td><td>계급</td><td>성명</td><td>계급</td><td>성명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</td><td>[별지 제7호서식] 무인비행장치(사고·고장·파손·분실) 발생 보고서
<table>
<tr><td rowspan="2">통제관 및 운용자</td><td colspan="2">통제관</td><td colspan="2">조종자</td><td colspan="2">부조종자</td></tr>
<tr><td>계급</td><td>성명</td><td>계급</td><td>성명</td><td>계급</td><td>성명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수정사유 제5조에서 약칭하는 용어를 '운용자'로 변경하고, 약칭 대상이 모호하지 않도록 조문 순서를 변경함. 또한, 약칭 변경에 따라 기존 '운용자등'을 '운용자'로 변경하고 별지서식도 수정</td></tr>
</table>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2조(정의) 1. ~ 2. (생 략) 3. "관리부서"란 각 소관기능 운용부서의 무인비행장치 보유 현황, 인력 관리, **운영** 실적, 사고 및 보험처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	**제2조(정의)** 1. ~ 2. (생 략) 3. ---------- **운용** ----------.
제4조(연간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 ②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5.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**운영**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**제4조(연간계획의 수립)** ① (생 략) ② ----------. 1. ~ 4. (생 략) 5. ---------- **운용**----------
제21조(지도점검)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**운영**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.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**운영**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.	**제21조(지도점검)** ① ---------- **운용** ----------. ② ---------- **운용** ----------.
수정사유 운영과 운용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므로, 용어를 통일하도록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7조(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부서의 장은 **예비요원 및 운용자등** 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 유지, 비행기술 향상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한다. ② (생 략)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**예비요원 및 운용자등**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	**제7조(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---------- **운용자 및 예비요원** ---------- ②(생 략) ③ **운용자 및 예비요원** ----------
수정사유 운용자가 앞에 오도록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8조(전문인력 양성)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**소속 공무원들이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** 조종자증명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	**제8조(전문인력 양성)** ---------- **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이** ----------
수정사유 주어를 정비하여 문장의 모호성을 해소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15조(민간 드론수색대의 특례) ① (생 략) ② 민간 드론수색대는 긴급한 경우 **촬영허가권자**에게 사전 **허가**를 받지 않고 항공촬영을 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경찰이 주관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범위로 한정한다.	**제15조(민간 드론수색대의 특례)** ① (개정안과 동일) ② ---------- **촬영승인권자**에게 사전 **승인**를 ----------
수정사유 개정 취지(「항공촬영지침 반영)에 맞게 제15조제2항의 '허가'를 '승인'으로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6조(예비요원의 지정 및 임무) ① 운용부서의 장은 **조종자 또는 부조종자** 부재 시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서원 중 2명을 예비요원으로 지정해야 한다.	**제6조(예비요원의 지정 및 임무)** ① ---------- **운용자** 부재시 ----------.
제17조(운용원칙) ① 무인비행장치는 **조종자와 부조종자가** 함께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점검을 위한 시험비행의 경우에는 **조종자 또는 부조종자** 단독으로 운용할수 있다.	**제17조(운용원칙)** ① ---------- **운용자가** 함께 ----------. ② ---------- **운용자** 단독으로 운용할수 있다.
제29조(정기점검 및 유지관리) ③ **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는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무인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을 실시해야한다.	**제29조(정기점검 및 유지관리)** ③ **운용자는** ----------.
수정사유 약칭을 사용하도록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30조(고장 등 발생 시 조치사항) ②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고장·파손된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필요시 보험사 등에게 통보하며, **수리 내역을** 별지 제8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·고장 및 수리현황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	**제30조(고장 등 발생 시 조치사항)** ② ----------, **수리 내역 등을** ----------.
수정사유 별지 서식에 기록해야 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'등'을 추가	

첨부2 주요 의견 (정기회의)

▢ 위원장 인사말씀

○ **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관련**,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**착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**해주시길 당부드림.

▢ 해양경찰청 성과관리 현황

○ 자체평가위원 선임 기준과 **주요업무계획 외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**이 있는지?

– 위원 선임은 국무조정실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함.

핵심성과지표를 통해 소속 기관 별 구조세력 도착시간, 인명구조율, 단속현황 등을 통계화 해서 관리 중.

▢ 「해양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」 제정안

○ 현업 부서에서 위탁교육훈련 관련 실질적인 교육 지도·감독이 어려우므로, **교육훈련담당관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** 및 교육예산 편성 기준 등을 규칙 내에 둘 필요는 없는지?

– **선발-교육진행-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을 교육훈련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관리**하고 있으며 미비점은 타 부처 사례를 벤치마킹

하여 보완하겠음. 예산은 기재부 및 국회 확정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어 '예산 내 범위'라고 명시했으나, 향후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시 당해 활용 가능한 예산 규모를 명확히 공지하겠음.

○ 현재 위탁교육훈련 규모와 방식, 예산 현황 등에 대한 **설명이 부족하여 심의에 어려움**이 있었음. 또한, **'경미한 사항' 이라는 표현은 판단 기준이 모호**하여 다소 부적절해 보임.

- 그간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별도 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적었음. **세부 현황 자료는 준비하여 별도로 제출**하겠음. **'경미한 사항'이라는 표현**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**수정하겠음**.

○ 국가 지원을 받아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장학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**사례가 실재 존재하는지**? 그리고 **해당 규정을 둔 취지**는 무엇인지?

- **교육비와 장학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**으로 실제 장학금 등을 받을 경우 신고 및 교육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있음. **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음**.

○ '사후 승인' 등 해석의 논란이 있거나, 보고서 평가 기준 등 **상위 규정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개선 건의**할 필요가 있어보임. 위탁교육 운영 현황은 별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람.

▢ 「**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**」 **일부개정안**

○ **‘총괄 부서’ 신설**이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?

– 직제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서의 임무를 명확하게 재정비한 것임. 드론 운용 확대에 따라 **경찰서 내 각 부서별로 파편화된 행정 업무**를 경비과 등 **‘총괄 부서’ 한 곳으로 통합**하여 **현장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함**임.

– 본청 행정 편의를 위한 개정은 아닌지?

– 경찰서에서도 여러 부서의 드론 업무를 하나의 부서가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.

○ **“운용자 등”이라는 표현은 법령 해석 상 혼란을 초래**할 수 있으므로 “조종자 및 부조종자” 또는 “운용자”로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– 조종자, 부조종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‘운용자’라는 용어를 또 사용해서는 안됨. **동일한 의미를 여러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**하므로 용어는 하나로 통일해야함.

– 법령상 용어는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 다만 **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면 위원회에서도 수용할 필요**가 있으며, **약칭에서 “등” 표현은 삭제하는 방향이 적절**해보임.

– **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약칭에서 ‘등’을 삭제**하겠음.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겠음.

○ 제8조에서 기존 문장 내 단어를 ‘소속 공무원’으로 변경하면서 주어가 중복 배치되어 문장 구조가 국어 문법상 어색해졌음. **기존 안의 구조를 유지한 채 명칭만 소속 직원에서 ‘소속 공무원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**함

– **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**하겠음.

▢ 기타 의견

○ 위원들이 법안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대상 및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하려면 기초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어야 함. 향후 **미래 지향적인 과제** 또는 **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**을 미칠 수 있는 **중요한 안건**일 경우 **해당 업무의 전반적인 현황과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‘현황 보고’를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하길 바람.**

– 위원님 의견에 공감함. 향후에는 **운영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심의 자료에 보다 충실히 포함**하여 준비하겠음.

○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**심의 안건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**해보이고, 법률적 용어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길 바람.

○ **위원회는**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관인 만큼 **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고려**해야함. 실무부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**충분한 검토가 필요**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**재상정을 통해 심의 완결성을 확보**하는 것도 필요함.

– 현장에서 규정 시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**경미한 수정사항까지 모두 재상정할 경우 행정이 지연될 우려**가 있음.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선 수정의결 후 시행하고, 이후 필요한 사항은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판단됨.

다만, **수정 내용이 크거나 법률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**함.